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2019.1.1. ~ 2019.12.31.



해양수산부

I.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선의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Ⅱ.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규칙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규칙

(2019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EEZ 및 대륙붕법>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 등의 법률 및 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어업협정> 및 관련 협의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이하 ‘중국수역’이라 함)에서 어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선박은 반드시 아래의 절차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은 대한민국 어선의 조업신청을 접수하고 어업조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조 입어신청

1. 중국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어선은 반드시 입어신청자(어선소유자 혹은 어업공사)가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 입어신청서> (이하 ‘입어신청서’라 함, 형식은 별첨1 참조)를 작성하고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 입어신청서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형식은 별첨2 참조)
2. 입어신청서와 입어신청서 총괄표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주중한국 대사관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에 제출한다. (서한형식은 별첨3 참조) 입어신청서나 총괄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각 어선의 선박국적증명서(혹은 선박등록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입어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국제톤수와 국내톤수의 관계 등 포함)

3. 본 절차와 규칙에서 말하는 어선에는 조업선 및 등선, 어획물 운반선 등의 어업 보조선이 포함된다. 모든 어선은 별도로 입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동일한 어선이 각기 다른 조업을 겸할 시에는 어업종류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 어업조업허가증의 심사 및 발급

1.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은 입어신청서를 받은 후 규정의 조건에 부합되는 어선에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조업허가증> (이하 ‘조업허가증’이라 함, 별첨4 참조)을 발급한다. 입어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발급하며, 만약 특수상황 발생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시는 상대방에 통보한다. 조업허가증은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한국해양수산부에 교부한다.
2. 입어신청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이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해양수산부에 문의한다. 다만, 적당한 방식을 통하여 직접 한국의 해양수산부에 연락할 수 있다. (전화: 82-44-200-5571, 82-44-200-5572)
3. 규정의 요구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입어신청에 대하여는 조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4. 조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에 동일선박으로 동일 어업종류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의 조업허가증 번호를 부여한다.

제3조 조업허가증의 재신청 및 재발급

1. 아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입어신청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조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이하 ‘재발급 신청서’라 함, 별첨5 참조)를 작성, 한국 해양수산부를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에 조업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조업허가증을 분실한 경우
 - (2) 조업허가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허가받은 선박이 기타 선박으로 변경된 경우
 - (4) 허가받은 선박의 선명 또는 신청인이 변경된 경우
 - (5) 제4조 제1항의 조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각 호 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업허가증 사본(제1항 (1), (2)호의 경우는 제외)
 - (2) 어업활동허가신청서 및 선박국적증서(혹은 선박등록증서) 사본 각1부
 - (3) 제1항 (1), (2)에 해당하는 경우 별첨5-1호 서식 제출
3.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은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조업허가증을 재발급 한다. 재발급 조업허가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며 만약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상대방에 통보한다. 재발급된 조업허가증의 번호는 기존 조업허가증과 같다. 다만, 선박과 신청인이 동시에 변경된 경우 새로운 허가번호를 부여한다.
4. 한국 해양수산부가 제1항의 (1)과 (2)를 제외하고는 입어신청자에게

재발급된 조업허가증을 전달할 시 반드시 전달과 동시에 기존 조업허가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이를 즉시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어선의 어획할당량은 기존 허가받은 어선의 어획할당량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기존 허가받은 어선이 당해 연도에 어획한 어획량은 조업허가증을 재발급 받은 어선이 어획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조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1. 아래의 상황 발생 시 조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1) 기재한 숫자나 내용에 착오가 있어 변경이 필요할 시
 - (2) 어선 톤수의 변경
 - (3) 어선기관 마력의 변경
 - (4) 선창용적의 변경
 - (5) 무선호출번호나 주파수의 변경
 - (6) 선박소유자의 주소변경
2. 신청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조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별첨6-1참조)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 이용)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선 톤수와 어선기관 마력은 조업조건이 규정한 허가 범위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FAX 번호 : 86-10-5919-4125, E-MAIL : chinacraa@126.com
3.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은 규정에 부합되는 신청을 수리한다. 그러나 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4. 한국 해양수산부는 중국에서 발급한 조업허가증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첨 제6-2호 서식의 “허가처분사항 정정요청서” 및 조업허가증사본을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에 이메일 (E-MAIL)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 이용) 제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은 기재내용이 정확한 조업허가증을 조속히 발급하도록 한다. 기재 내용의 오류가 있는 조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어선은 신규 조업허가증 발급 이전까지는 기존 조업허가증으로 조업할 수 있다.

제5조 조업허가증 반납

조업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에 조업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허가받은 어선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허가받은 어업활동을 스스로 중단할 경우
4. 허가받은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변경된 경우
5. 조업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6조 중국수역 입·출역 통보

1. 한국 어선은 중국수역 입역 12시간 이전 및 출역 후 24시간 이내에 (기국 시간에 근거함) <한국어선의 중국수역 입·출역 통보서> (별첨7 참조)를 작성, 한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이메일 (E-MAIL)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 이용)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락처는 제4조2항 참조, 이메일 (E-MAIL) : chinacraa@126.com

2. 한국 어선이 어장형성 및 불가피한 원인으로 인하여 긴급히 중국수역에 입역하여야 할 시에는 중국수역 입역 2시간 전에 긴급 통보할 수 있다.
3. 어선이 24시간 이내에 수 차례 중국수역을 입·출역할 경우 1회만 통보할 수 있다.
4. 선망어선의 조업선과 부속선 및 쌍끝이 어선의 본선과 부속선이 하나의 선단을 이루어 중국수역에 입·출역 할 경우 반드시 선단 전체 각 어선의 선박명과 번호 및 조업허가증 번호를 일괄 통보하여야 한다. 운반선이 선단과 함께 중국수역에 입·출역하지 아니할 경우, 입·출역 시 매번 통보하여야 한다.
5. 통보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할 내용 위에 두 줄(=)을 긋고 그 상단이나 하단에 수정할 내용을 기입하여 이메일(E-MAIL)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 이용) 다시 통보한다. 또한 입·출역 정보에 의문이 있을 경우 이메일(E-MAIL)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 이용) 조회하고, 조회를 받은 대한민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메일(E-MAIL)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 이용)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
6. 중국수역에 입·출역을 통보한 한국어선이 실제로 입역 또는 출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통보한 별첨 제7호서식의 우측상단에 “입역 취소” 또는 “출역 취소”를 기재하여 즉시 이메일(E-MAIL)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 이용) 다시 통보한다.
7. 한국 어획물운반선이 중국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첨 13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실시요령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조업일지

1. 입어허가를 받은 한국어선은 중국수역에 입역한 날로부터 출역하는 날까지 조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EEZ 조업일지> (이하 ‘조업일지’라 함, 별첨8, 8-1 참조)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업일지는 매일 1페이지씩 작성하며 전일 정오 12시에서 당일 정오 12시(기국 시간)까지의 조업상황과 어획량을 기록한다. 누계생산량 이라 함은 당해연도 중국EEZ에 입역하여 조업을 한 날로부터 당일까지의 총어획생산량을 가리킨다.
3. 조업횟수는 저인망, 선망, 안강망은 어망을 거두어들인 횟수를, 유자망과 낚시류, 통발류 등은 어구를 거두어들인 횟수를 1회로 계산한다.
4. 중국수역 외에서 조업한 한국 어선이 어획물이나 가공품을 휴대한 채 중국수역에 입역할 경우 반드시 조업일지의 비고란에 휴대한 어획물이나 가공품의 중량과 어종을 명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5. 조업선, 등선, 운반선 및 기타 보조선은 반드시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조선은 필요한 내용만 기입할 수 있다.
6. 선장은 조업일지의 진실성과 완벽성에 대한 책임을 지며 매일 조업일지에 서명하여야 한다. 조업일지의 각 란에는 공란이 있을 수 없으며 기입할 내용이 없을시 사선 또는 수평선을 긋도록 한다. 단, 조업종료 또는 어획물전재 후 더 이상의 어획실적 또는 전재물량을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경우, 이하의 남은 공란에 대하여는 “이하여백”이라고 기재한다.
7. 조업일지의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할 내용 위에 두 줄(=)을 긋고 그 상단이나 하단에 수정할 내용을 기입하며 비고란에 수정한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기입한다.
8. 당해연도의 조업일지는 반드시 순서에 맞게 철을 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입어신청자는 중국 유관 당국이나 어정검사원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필요한 조업일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어업종류는 부호로 표기한다. A: 저인망 B: 선망 C: 안강망 D: 자망류 E: 낚시류 F: 통발류 Y: 일반운반선

10. 조업일지는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재하여야 하며, 연필 등 수정이 가능한 펜으로 기입할 수 없다.
11. 동일한 어선으로 2이상의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어업활동의 종류마다 조업일지를 작성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제8조 조업 일일 보고

1. 한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업종류에 따라 중국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의(등선과 운반선 등의 보조선 포함) 선장이 보고한 조업 일일 보고서 [별첨9 (조업선) 및 별첨9-1 (일반어획물운반선)] 을 매일 정리하여 이메일(E-MAIL)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 이용)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에 통보한다. 연락처는 제4조 2항 참조. 다만, 불법어업으로 상대국 지도선에 나포되어 상대국 영해나 항내에 입항할 경우 일일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나포가 해제된 경우 조업절차에 따라 일일보고를 한다.
2. <조업 일일 보고서>의 당일 어획량에는 어선이 전일 정오 12시부터 당일 정오 12시까지 조업한 상황을 기록한다. 누계어획량은 어선의 당해 연도 보고 당일까지의 누계 어획량을 말한다. 어선이 조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없을 시에도 <조업 일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선박위치만 기입할 수 있다.
3. 어종을 기입할 때에는 어업종류에 따라 아래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입한다.
 - 저인망류 : 가지미류, 갈치, 참조기, 병어, 삼치, 아귀류, 두족류, 멸치, 장어류, 기타
 - 선망류 : 고등어, 전갱이, 삼치, 두족류, 기타
 - 안강망 : 갈치, 참조기, 병어, 고등어, 기타
 - 자망류 : 갈치, 참조기, 병어, 게류, 기타
 - 낚시류 : 장어류, 복어, 두족류, 기타
 - 통발류 : 장어류, 게류, 두족류, 고등어, 기타

4. <조업 일일 보고서>의 선박위치는 GPS를 기준으로 하며 당일 정오 12시의 선박위치를 기록한다. 단 선망과 오징어채낚기는 당일 0시의 선박위치를 기입한다.
5. 당일의 <조업 일일 보고서>는 반드시 다음날 24시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조업 일일 보고서>를 발송한 후 잘못 기입한 사실을 발견, 수정이 필요할 시에는 수정할 내용 위에 두 줄(=)을 긋고 그 상단이나 하단에 수정할 내용을 기입하여 수정된 <조업 일일 보고서>를 다시 발송한다. 또한 조업일일보고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이메일(E-MAIL)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 이용) 조회하고 조회를 받은 대한민국 수협중앙회는 신속히 이메일(E-MAIL)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 이용)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 어획할당량 및 변경

1.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은 한국 해양수산부에 매년도 한국어선의 어업종류별 어획할당량을 통보하며 한국 해양수산부는 그 할당량에 근거하여 입어를 신청한 한국어선의 어획할당량 분배를 확정한다.
2. 조업허가를 받은 한국어선은 본 조의 제1항이 규정한 어선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할 수 없다. (조업을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투망한 어구로 포획한 실질어획량으로 인해 당해 연도 어획량을 초과하였으나 그 수치가 5%미만일 경우는 예외로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선의 당해 연도 업종별 실질 총어획량은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이 한국 해양수산부에 통보한 당해 연도 한국어선의 업종별 어획할당량을 초과할 수 없다.)
3. 본 조의 제1항이 규정한 각 어선의 어획할당량을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을 경우, 당해 연도 내에 동일 업종간 2회를 초과하지 않는 한

조정할 수 있다. 어획할당량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한국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사전에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에 <어획할당량 변경 신청서> (별첨10 참조, 서한형식은 별첨11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은 <어획할당량 변경 신청서>를 받은 후 규정에 부합하는 어선에 대하여 <어획할당량 변경 증명서> (별첨12 참조)를 발급하고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하여 한국 해양수산부에 전달한다.
5. 어획할당량이 변경된 한국어선이 중국수역에서 조업할 시 반드시 <어획할당량 변경 증명서>와 조업허가증을 동시에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어선의 표지

1. 중국 수역에서의 조업 허가를 받은 한국어선이 중국 수역에 입역하여 조업할 시 반드시 도안과 색깔의 규정에 따라 조타실 양쪽의 눈에 띄는 부분에 조업허가증 번호 표지판을 걸어야 한다.
2. 한국어선 표지판의 바탕색은 녹색, 글자는 흰색으로 기입한다. 글자의 색은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형광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지판과 글자는 전혀 손상이 없도록 유지하여 식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표지판은 장방형으로 길이는 150cm×50cm 이상이어야 한다. 글자 크기는 30cm, 넓이는 15cm, 두께는 4cm 이상이어야 한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은 5cm 이상이어야 한다.
4. 표지판은 반드시 강하고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훼손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관리규정

1. 허가를 받고 중국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는 한국어선은 반드시 조업 허가증 (어획할당량 증명서 포함)과 선박국적증명서 (혹은 선박등록증), 선원명부 및 선원의 신분증(한국의 주민등록증 포함), 어선 선창 배치도를 휴대하여야 한다. 조업허가증과 어획할당량 증명서는 반드시 조타실 내의 눈에 띄는 곳에 두어야 한다.
2. 금어기 혹은 금어구에서는 어떠한 조업활동도 할 수 없다. 항해 중인 어선은 반드시 어구를 정리하여 보관하거나 덮어두어야 한다.
3. 어선에 적재한 어획물과 조업일지에 기재된 어획량의 오차허용범위는 냉동 어획물과 신선 어획물은 $\pm 5\%$, 얼음을 넣어 처리하는 빙장 어획물은 $\pm 10\%$ 이내 이어야 한다.
4. 쇠창살, 철망 등 중국 어업지도단속원의 승선조사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어선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국의 어업지도 단속원이 어선을 승선검색할 시 선장과 선원은 반드시 이에 협력하여야 하며, 편의와 협조를 제공하여 어업지도 단속원의 신변안전과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어업지도 단속원이 선상의 구명환, 안전사다리, 보트 혹은 기타 설비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선장과 선원은 반드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어선은 국적과 관계없이 어장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우선 조업을 할 수 있다. 조업 중이거나 항해 중인 어선은 반드시 선박간 거리를 유지하고 해상충돌 예방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로 타 어선의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6. 조업 분규 발생 시 반드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귀국 후 관련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해상에서의 싸움, 파괴,

약탈, 구류 등의 불법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7. 망목 측정 시 그물의 길이 방향으로 연속 10개의 망목(침수후 당겨서 망목이 상하로 붙어 일직선이 된 내경)을 각각 측정한 평균치를 낸다.
8. 본 절차 규정상의 시간은 기국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선박의 위치는 GPS의 경도와 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부칙

본 절차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前次許可證編號 (이전허가증번호)	
----------------------	--

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管理水域入漁申請書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 입어신청서)

申請人姓名 (신청인성명) : 한자 _____ 한자 _____
 로마자 _____ (신청인주소) : 한글 _____

申請作業事項(조업신청사항)

漁船名号 (어선명)	한자 한글	漁船種類 (어선종류)		作業類型 (어업종류)	
作業水域 (조업수역)		作業時間 (조업기간)	年(년) 月(월) 日(일)至(부터) 年(년) 月(월) 日(일)		
捕撈魚種 (어획어종)					合計 (합계)
魚獲配額 (어획할당량) (kg)					

漁船及船員資料(어선 및 선원 정보)

船長姓名 (선장성명)	한자 로마자	地址 (주소)	한자 한글
船舶注册号码 (어선등록번호)		船籍港 (선적항)	한자 / 로마자
船舶呼号 (선박호출번호)		船艙數量 和容積 (선창수와 용적)	水艙 (물탱크) 數量 : (個) 艙容 : 立方米 (수) : (개) (용적) : (m³)
最大航速 (최대속력)	노트(節)		魚艙 (어창) 數量 : (個) 艙容 : 立方米 (수) : (개) (용적) : (m³)
船員人數 (선원수)			油艙 (기름탱크) 數量 : (個) 艙容 : 立方米 (수) : (개) (용적) : (m³)
緊急叫無線電頻率 (긴급호출무선주파수) :		MHz	無線電話頻率 (무선전화주파수) : MHz
船舶登記尺度 米 (선박등록크기) (m)	全長 (전장)L :	米 (m)	型寬 (너비)B : 米 (m)
			型深 (깊이)H : 米 (m)
船舶登記噸位(선박등록톤수)		噸(톤)	國際總噸位(국제총톤수) 噸(톤)
主機數量(주기관수):		台(대)	主機總額定功率 (주기관총규정출력) : 千瓦(kw) 馬力(hp)

※ 설명

1. 어선종류, 어업종류, 조업수역, 포획어종은 부호로 기입하시오. 어종별 어획할당량의 기입여부는 한중 쌍방의 협의로 결정한다.(“어획어종”란은 기입하지 않으며, “어획할당량”란은 “합계”란에만 기입할 것)
2. 어선종류 부호 : A조업선, B등선, C선망운반선, D일반운반선
3. 어업종류 부호 : A저인망류, B선망, C안강망, D자망류, E낚시어구류, F통발류, Y일반운반선
4. 조업수역 부호 : A황해, B북위27도 이북의 동해, C북위27도 이남의 동해
5. 포획어종 부호 : A갈치, B참조기, C병어, D삼치, F고등어, G복어, H장어류, I멸치, L계류, M두족류, N기타, O아귀류, Q전갱이, R가자미류
6. 표에서 한자로 기입할 수 없는 부분은 한글과 로마자로 표기한다.

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管理水域入漁申請書匯總表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 입어신청서 총괄표)

作業類型(어업종류) : (代碼)(부호) 制表日期(일시) : 年(년) 月(월) 日(일)

序号 (일련 번호)	前次許可證編號 (이전허가증번호)	申請者姓名 (신청인성명) (漢字(한자)/ 拼音(로마자))	船名号(선명) (漢字(한자)/ 韓文(한글))	魚獲配額(어획할당량)(kg)					
				魚種 代碼 (어종 부호)	魚種 代碼 (어종 부호)	魚種 代碼 (어종 부호)	魚種 代碼 (어종 부호)	其他 (기타)	合計 (합계)
1	/	/	/						
2	/	/	/						
3	/	/	/						
合計(합계)			艘(척)						

주)

1. 어업종류에 따라 각기 총괄표를 작성한다. 모든 어선이 기입해야 한다.(부속선 포함)
2. 어업종류 부호 : A저인망류, B선망, C안강망, D자망류, E낙시어구류, F통발류, Y일반운반선
3. 포획어종 부호 : A갈치, B참조기, C병어, D삼치, F고등어, G복어, H장어류, I멸치, L게류,
M두족류, N기타, O아귀류, Q전갱이, R가자미류
4. 표의 일련번호와 신청인 성명, 선명은 입어신청서의 일련번호, 신청인 성명, 선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어종별 어획할당량의 표기 여부는 한중 쌍방의 협의로 결정한다.

附件(별첨) 3

((提交入漁申請書信函格式)(입어신청서 제출용 서한 형식))

文書編號(문서번호):

**關於提交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管理水域入漁申請書的函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 입어신청서 서한)**

中華人民共和國 农业農村部 渔业漁政管理局(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局長(국장):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어업협정>에 근거하여
20 년도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 입어신청서> (혹은 <중화
인민공화국 어업조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__부를 제출하니 비준을
바랍니다.

- 첨부 : 1. 입어신청서 총괄표 1부
2. 입어신청서 __부. 끝.

大韩民国 海洋水产部 长官(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

20 년__월__일

附件(별첨) 4

((中華人民共和國漁業捕撈許可證樣式)(중화인민공화국 어업조업허가증 양식))

((正面)(앞면))

中華人民共和國國徽(중화인민공화국국휘)

中華人民共和國 漁業捕撈許可證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조업허가증)

(外國漁船專用)

(외국어선 전용)

中華人民共和國 農業農村部 漁業漁政管理局制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제

(背面)(뒷면)

許可證号(허가증 번호):

捕撈許可核准登記內容
(조업허가비준등록내용)

船名号(선명):

船籍港(선적항):

申請人姓名(신청인성명):

地址(주소):

船舶登記号(어선등록번호):

船舶呼号(선박호출번호):

船舶噸位(선박톤수): 總噸位(총톤수)___總噸(톤)

主機(주기관): 수(數量)

台(대), 總功率(총출력)千瓦(KW)

船舶尺寸(선박크기): 長(길이)

m, 寬(너비) m, 深(깊이) m

作業類型(어업종류):

作業範圍(조업범위):

作業時限(조업기간): 自(부터)

至(까지)

主要捕撈品種(주포획어종) :

捕撈配額(어획할당량) :

噸(톤)

發證機關(허가증 발행기관) 盖章(인)

中華人民共和國 漁業捕撈許可證重新發證申請書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조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捕撈許可證編號 (조업허가증번호)	
漁船名号 (어선명)	漢字(한자) 韓文(한글)
作業類型 (어업종류)	代碼(부호)
申請者姓名 (신청인성명)	漢字(한자) 拼音(로마자)
申請者地址 (신청인 주소)	漢字(한자) 韓文(한글)
申請重新發證原因 (재발급 신청사유)	代碼(부호)

설명 :

1. 사유 부호: A 허가증 분실, B 허가증 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음, C 선박 변경,
D 선명 변경, E 신청인 변경, F 제4조제1항의 조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재발급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기존의 조업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A, B가 원인일 경우는 제외)
 - (1) 원 허가증 사본(A, B 제외)
 - (2) 입어신청서와 선박국적증서(또는 선박등록증서) 사본
 - (3) A, B가 원인인 경우에는 별첨5-2의 허가증 분실, 훼손 사유서 1부.

허가증 분실, 훼손 사유서

1. 허가번호 :

2. 신청인
 성명 : (한자) _____ (서명) _____

주소 : (한자) _____

3. 어선명 : (한자) _____

4. 어업의 종류 : _____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동 허가증 원본을 분실·훼손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허가증 원본을 반납할 수 없습니다.

확인

년 월 일

* 작성요령

1. 부분은 한국어로 기재한다.
2. “확인” 은 지방 정부기관의 직인을 날인한다.

附件(별첨) 6-1

件人(수신자) : 中華人民共和國 农业农村部 渔业渔政管理局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傳眞号(FAX 번호): 86-10-5919-4125, E-MAIL(이메일): chinacraa@126.com

中華人民共和國 漁業捕撈許可證 記載事項 變更申請書
(중화인민공화국 어업조업허가증 기재내용 변경신청서)

漁船名号(어선명)	漢字(한자) 韓文(한글)	捕撈許可證号 (조업허가증 번호)	
申請變更原因(代碼) (변경신청사유)(부호)		申請變更內容 (변경신청 내용)	
變更前的記載事項 (변경전 기재사항)-1		變更後的記載事項 (변경후 기재사항)-1	
變更前的記載事項 (변경전 기재사항)-2		變更後的記載事項 (변경후 기재사항)-2	
變更前的記載事項 (변경전 기재사항)-3		變更後的記載事項 (변경후 기재사항)-3	
變更前的記載事項 (변경전 기재사항)-4		變更後的記載事項 (변경후 기재사항)-4	
變更前的記載事項 (변경전 기재사항)-5		變更後的記載事項 (변경후 기재사항)-5	
申請者姓名 (신청인 성명)	漢字(한자) 拼音(로마자)	經辦人 簽名 (처리인 서명)	
經辦人傳眞号 (처리인 FAX번호)		申請時間 (신청일자)	年(년) 月(월) 日(일)

변경 신청 사유 부호

- A 숫자나 내용 변경
- B 어선톤수 변경
- C 주기관 출력 변경
- D 무선호출번호 혹은 주파수 변경
- E 선창 용적 변경
- F 선박소유자의 주소변경

許可處分事項 訂正 要請書
(허가처분사항 정정 요청서)

文書番號(문서번호)

受 信(수신)

發 信(발신)

번 호	어선명칭	허가증번호	허가신청	허가증 발급	비 고

첨부 : 허가증 사본 1부.

상기 허가에 대하여는 허가를 신청한대로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아 정정을 요청하오니 조업허가증을 다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年 月 日

大韓民國 海洋水産部 長官(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

韓國漁船進出中國水域通報單 (한국어선의 중국수역 입·출역 통보서)

進入(입역)(IN) / 離開(출역)(OUT)

漁船名号(어선명)	漢字(한자) 韓文(한글)	捕撈許可證号 (조업허가증번호)	
作業水域(조업수역)		作業類型 (어업종류)	
漁獲物積載量 (어획물 적재량) (kg)		漁獲物主要品種 (어획물 주요품종)	
報告時的時間和船位 (보고당시의 시간과 선박의 위치)	時間(시간)	年(년) 月(월) 日(일) 時(시) 分(분)	
	船位(선박의 위치)	° ' "N ° ' "E	
進入(입역) (IN)	豫定進入時間 (예정입역시간)	年(년) 月(월) 日(일) 時(시)	
	豫定進入位置 (예정입역위치)	° ' "N: ° ' "E	
離開(출역) (OUT)	離開時間 (출역 시간)	年(년) 月(월) 日(일) 時(시)	
	離開位置 (출역 위치)	° ' "N: ° ' "E	

[설명]

1. 어선이 중국 수역을 입역 혹은 출역 시, 표 상단의 “입역(IN)/ 출역(OUT)”에 표시 하여야 한다.
2. 어업종류는 부호로 표기한다. A저인망류, B선망, C안강망, D자망류, E낚시어구류, F통발류, Y일반운반선
3. 조업수역은 부호로 표기한다. A황해, B북위27도 이북의 동해, C북위27도 이남의 동해
4. 입역과 출역은 중화인민공화국 EEZ 경계선상 시간과 위치(다만, EEZ 경계선을 통과하는 실제 위치와 통과예정위치와의 오차범위는 3해리 이내)를 기록하며, 경도와 위도의 위치는 GPS를 기준으로 기입한다.

附件(별첨) 8

(封面格式)(표지양식)

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 漁撈日誌
(중화인민공화국 E E Z 조업일지)

20__年(년) __月(월) __日(일)自(부터) 20__年(년) __月(월) __日至(일)

漁船名号(어선명)	한자 / 한글
撈許可證号 (조업허가증 번호)	
作業類型 (어업종류)	
作業許可申請者 (被許可人) 조업허가 신청인 (피허가인)	

總頁數(총 페이지 수): ()

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漁撈日誌
(중화인민공화국 EEZ 조업일지)

船名號(어선명) 捕撈許可證號(조업허가증번호) 年 月 日 (月 日 自(부터) 月 日 正午 12時至(까지))

回數 (회수)	下網開始時間 (투망시작시간)			起網結束時間 (조업종료시간)			主要漁獲物品種產量(주요어획물생산량)(Kg)											備注 (비고)	
	월일	시각 (시분)	船位 (선박 위치) (위도, 경도)	월일	시각 (시분)	船位 (선박 위치) (위도, 경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1	/		N ° ' / E ° '	/		N ° ' / E ° '													
2	/		N ° ' / E ° '	/		N ° ' / E ° '													
3	/		N ° ' / E ° '	/		N ° ' / E ° '													
日產量計(일일 생산량계) (전일정오~당일정오의 어획량)																			
累計產量(누계생산량)																			

漁獲物轉載記錄(어획물전재기록)(기타선박으로 전재했거나 기타선박으로부터 전재받은 부분)

船名号 (어선명)	捕撈許可證号 (조업허가증번호)	時間(시간) (시:분)	位置 (위치) (위도,경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합계	해당부분 ○하시오
			N ° ' / E ° '														轉載(전재함)/扒載(전재받음)
			N ° ' / E ° '														轉載(전재함)/扒載(전재받음)

填寫者 簽名(작성자 서명) :

船長簽名(선장 서명) :

※ 어종별 어획 코드

帶魚 (갈치) A	小黃魚 (참조기) B	鯧魚 (병어) C	鮫魚 (삼치) D	鮐魚 (고등어) F	河魨 (복어) G	鰻類 (장어류) H	鯉魚 (멸치) I	蟹類 (게류) L	頭足類 (두족류) M	鮫鰈類 (아귀류) O	竹莢魚 (전갱이) Q	鰈魚類 (가자미류) R	其他 (기타) N
-----------------	-------------------	-----------------	-----------------	------------------	-----------------	------------------	-----------------	-----------------	-------------------	-------------------	-------------------	--------------------	-----------------

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漁撈日誌(一般漁獲物運搬船)
(중화인민공화국 EEZ 조업일지)

船名号(어선명) 捕撈許可證号(조업허가증번호) 年 月 日 (月 日 自(부터) 月 日 正午 12時至(까지))

漁獲物轉載記錄(어획물전재기록)(기타선박으로부터 전재받은 부분)

船名号 (어선명)	捕撈許可證号 (조업허가증번호)	時間(시간) (시:분)	位置 (위 치) (위도,경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합계
			N ° '														
			E ° '														
			N ° '														
			E ° '														
			N ° '														
			E ° '														
			N ° '														
			E ° '														
			N ° '														
			E ° '														

填寫者 簽名(작성자 서명) :

船長簽名(선장 서명) :

※ 어종별 어획 코드

帶魚 (갈치) A	小黃魚 (참조기) B	鯧魚 (병어) C	鮫魚 (삼치) D	鮫魚 (고등어) F	河魨 (복어) G	鰻類 (장어류) H	鯢魚 (멸치) I	蟹類 (게류) L	頭足類 (두족류) M	鮫鱈類 (아귀류) O	竹莢魚 (전갱이) Q	鱒魚類 (가자미류) R	其他 (기타) N
-----------------	-------------------	-----------------	-----------------	------------------	-----------------	------------------	-----------------	-----------------	-------------------	-------------------	-------------------	--------------------	-----------------

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 作業日報表(操業船)
(중화인민공화국 EEZ 조업일일 보고서)(조업선)

作業類型 . 代碼 作業時間 : 20 年 月 日 12時自(부터) 月 日 12時至
(어업종류) . (부호) (조업기간)

捕撈許可證号 (조업허가증번호)	船名号 (어선명)	船位(선박의 위치) (정오12시 또는 0시)	漁獲量 (어획량) (kg)	分魚種漁獲量 (어종별어획량) (kg)					
				代碼 (부호)	代碼 (부호)	代碼 (부호)	代碼 (부호)	其他 (기타)	合計 (합계)
	한자	북위: °'''	當天 (당일)						
	한글	동경: °'''	當年 (당해년)						
	한자	북위: °'''	當天 (당일)						
	한글	동경: °'''	當年 (당해년)						

制表日期(표 기입일) : 年 月 日 制表人簽名(작성인 서명) :

< 설 명 >

1. <조업 일일 보고서>는 어업종류에 따라 어선별로 매일의 조업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조업시간은 전일 정오 12시부터 당일 정오 12시까지이다. 선망과 오징어 채낚기는 당일 0시의 선박 위치를 기입하고 기타 어업종류는 당일 정오 12시의 선박 위치를 기입한다.
2. 어업종류 부호 : A저인망류, B선망, C안강망, D자망류, E낚시어구, F통발류.
3. 포획어종 부호 : A갈치, B참조기, C병어, D삼치, F고등어, G복어, H장어류, I멸치, L게류, M두족류, N기타, O아귀류, Q전갱이, R가자미류
4. 표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한다. 경도와 위도는 GPS를 기준으로 한다.

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轉載日報表(一般運搬船)
(중화인민공화국 EEZ 전재일일 보고서)(일반운반선)

作業類型 代碼 作業時間
(어업종류) : (부호) (조업기간) : 20 年 月 日 12時自(부터) 月 日12時至

운반선재원 및 조업위치			어획물을 전재받은 선박재원		
捕撈許可證号 (조업허가증번호)	運搬船名号 (운반선선명)	船位(선박의 위치) (정오12시)	許可證番號 (허가증 번호)	漁船名稱 (어선명칭)	轉載量(kg) (전재량)
	한 자	북위: °′′			
	한 글	동경: °′′			
	한 자	북위: °′′			
	한 글	동경: °′′			

制表日期(표 기입일) : 年 月 日 制表人簽名(작성인 서명) :

<설 명>

1. 이 보고서는 일반어획물운반선이 작성하여야 한다.
2. 어업종류 부호 : Y 일반운반선
3. '운반선의 명칭' 및 어선의 명칭' 란은 어업활동허가신청서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4. '어획물 전재량의' 란은 전일 정오 12시부터 당일 정오 12시까지 전제한 어획량 수량을 kg으로 기재한다.
5. '정오위치' 란은 당일 정오 12시의 위치를 GPS에 나타나는 위도 및 경도("분"이하는 소숫점 이하 두자리에서 사사오입)로 기재한다.

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 漁獲量配額變更申請書
(중화인민공화국 EEZ 어획할당량 변경 신청서)

1. 作業類型(어업종류):
2. 漁獲量配額減少의漁船(어획할당량이 감소된 어선)

捕撈許可證編號 (조업허가증번호)	船名号 (어선명)	原漁獲配額 (기존 어획할당량)	剩餘漁獲配額 (잔여 어획할당량)	變更後的漁獲配額 (변경 후의 어획할당량)	減少的漁獲配額 (감소된 어획할당량)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合計(합계)					

3. 漁獲量配額增加의漁船(어획할당량이 증가된 어선)

捕撈許可證編號 (조업허가증번호)	船名号 (어선명)	原漁獲配額 (기존 어획할당량)	剩餘漁獲配額 (잔여 어획할당량)	變更後的漁獲配額 (변경 후의 어획할당량)	增加的漁獲配額 (증가된 어획할당량)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合計(합계)					

주: 어획할당량은 톤(M/T)으로 표기한다. 각 어선은 허가증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附件(별첨) 11

(提交漁獲量配額變更申請書信函格式)(어획할당량 변경 신청서 제출 서한 형식)

文書編號(문서번호):

關於提交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漁獲量配額變更申請書的函
(중화인민공화국 EEZ 어획할당량 변경신청 제출에 관한 서한)

中華人民共和國 农业农村部 渔业渔政管理局 局長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국장):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선의 조업절차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EEZ 어획할당량 변경
신청서> __부를 제출하니 비준을 바랍니다.

첨부 : 어획할당량 변경신청서 부

大韓民國 海洋水產部 長官(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

20 年 月 日

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 漁獲量配額變更證明書
(중화인민공화국 EEZ 어획할당량 변경 증명서)
(20 年度)

捕撈許可證編號(조업허가증 번호):

漁船名号(어선명): 한자 / 한글

作業類型(어업종류):

許可作業時間(허가 조업기간): 20 年 月 日自(부터) 20 年 月 日至(까지)

變更前的漁獲量配額(변경전의 어획할당량): 噸(톤)

變更後的漁獲量配額(변경후의 어획할당량): 噸(톤)

中華人民共和國農業農村部漁業漁政管理局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印)

20 年 月 日

漁獲物運輸船定點檢查制度實施方案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실시 요령)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3차 연차회의에서 합의한 어획물운반선(이하 '운반선'이라 한다)체크포인트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 본 실시요령을 제정한다.

1. 정의

운반선은 상대국 EEZ내 입·출역시 반드시 지정된 해역을 경유하여 통과하며, 상대국 지도단속선의 승선조사에 협조한다.

지정된 해역은 한·중 양국이 합의한 체크포인트에서 3마일 이내의 수역을 말한다.

2. 실시기관

1) 한국측 실시기관

(1) 통보기관은 대한민국 수협중앙회(전화 : 82-2-2240-2323, 팩스 : 82-2-2240-3032, 82-2-2240-3027, 이메일: nffc_rs@suhyup.co.kr) 및 서해어업관리단 공동대응센터(전화 : 82-61-240-7941, 팩스 : 82-61-240-7948, 이메일 : westship2@korea.kr)로 한다.

(2) 단속기관은 서해어업관리단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 중국측 실시기관

(1) 통보기관은 중국 어업협회로 한다.(전화: 86-10-5919-4145, 팩스 : 86-10-5919-4125, 이메일: chinacraa@126.com)

(2) 단속기관은 중국 해경국으로 한다.

3. 실시방법

운반선이 상대국 EEZ내 입·출역시 반드시 제4항의 체크포인트 중 하나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택한 체크포인트를 사전 통보 및 호출하고, 상대국 지도단속선의 승선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운반선 체크포인트

1) 한국측 체크포인트

K1 : 36°55'00 " N, 124°25'00 " E
K2 : 36°30'00 " N, 124°30'00 " E
K3 : 36°00'00 " N, 124°30'00 " E
K4 : 35°30'00 " N, 124°30'00 " E
K5 : 34°30'00 " N, 124°06'00 " E
K6 : 34°00'00 " N, 124°02'00 " E
K7 : 33°30'00 " N, 124°08'00 " E
K8 : 33°00'00 " N, 124°34'00 " E
K9 : 32°30'00 " N, 125°05'00 " E
K10 : 32°11'00 " N, 126°00'00 " E

2) 중국측 체크포인트

Z1 : 36°15'00 " N, 123°00'00 " E
Z2 : 35°30'00 " N, 122°00'00 " E
Z3 : 34°00'00 " N, 122°00'00 " E
Z4 : 33°00'00 " N, 123°00'00 " E
Z5 : 32°20'00 " N, 123°45'00 " E
Z6 : 29°40'00 " N, 123°30'00 " E
Z7 : 29°40'00 " N, 124°00'00 " E
Z8 : 29°40'00 " N, 124°30'00 " E
Z9 : 29°40'00 " N, 125°00'00 " E
Z10 : 29°40'00 " N, 125°30'00 " E

5. 입·출역 통보 절차

1) 운반선이 상대국 EEZ내 입역하기 전 입어절차 규칙상의 "입·출역 정보의 제출서식"에 따라, '입역예정시간'란에 체크포인트 통과예정시간을, '입역예정 위치'란에 통과예정인 체크포인트 일련번호 또는 경·위도 등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운반선이 상대국 EEZ를 출역할 때에는 상기방식을 따르지 않고 아래 제2항을 따른다.

2) 운반선이 상대국 EEZ 수역을 입·출역 할 때 체크포인트로부터 1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또는 통과 1시간 전) VHF ch16(156.8Mhz)를 이용해 상대국 지도단속선을 호출하여 통과 예정시간과 위치를 보고하고 이상의 사항을 조업일지에 기입한다. 다만, 상대국 지도단속선 호출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 운반선 선장은 통과예정 시간 및 위치를 수협중앙회를 통해 중국어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체크포인트 통과 10분전인 경우 다시 VHF ch16(156.8Mhz)를 사용해 상대국 지도단속선을 지속적으로 호출하여 통과예정인 시간과 위치를 보고하고, 동 사항을 조업일지에 기입한다.

4) 운반선은 자발적으로 상대국 지도단속선의 승선조사에 협조한다. 승선 조사가 끝난 후 상대국 단속공무원은 승선조사 상황을 운반선 조업일지에 기입하고 날인 확인한다.

5) 운반선이 통과예정인 체크포인트에서 상대국 지도단속선을 호출하여 응답이 없을 경우, 운반선 선장은 수협중앙회에 동 내용을 보고하고, 수협중앙회는 동 내용을 중국어업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제5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국어업협회는 '승선조사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반선이 체크포인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에 허가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운반선 선장은 동 내용을 조업일지에 기재한 후, 입역한다.

7) 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상대국 지도단속선 호출은 한국어로 "중국 지도단속선" 또는 중국어로 "中國指導團東船"로 한다.

6. 제5항 제2호 내지 제7호까지의 개정내용은 1년간 시범실시하고 정식 실시 여부는 제19차 한중 어공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IV.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규칙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규칙

(2019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2조제2항 및 부속서 I의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및 어선의 어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절차규칙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제1조 허가의 신청

- ①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이하 “한국수역”이라 한다)에서 어업활동(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이와 관련된 탐색, 잡어, 어획물의 보관, 운반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및 어선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어업활동허가신청서(이하 “허가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부장(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8조 및 중화인민공화국관할해역에서의 외국인, 외국어선 어업활동 관리관련 잠정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외국어선에 대한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국장을 말한다. 이하 “중국 농업농촌부”라 한다)을 통하여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이하 “한국 해양수산부”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어선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어선이어야 하고, 당해 어선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선장 또는 조업책임자가 승선하여야 한다.
- ③ 한국수역에서 하고자 하는 어업활동이 부속선(附屬船 : 2척식저인망

(雙船拖網)의 종선(從船)과 선망(圍網)의 운반선 및 등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선(本船 : 2척식저인망의 주선(主船)과 선망의 망선(網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속선의 선별내역서(船別內譯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동일한 어선으로 2이상의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업활동의 종류마다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중국 농업농촌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한 어선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국적증서 사본이나 선박등록증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위의 증서가 없는 부속선은 주선의 증서 복사본과 별지 2-1호 서식의 부속선 정보 원본 첨부 가능. 이 경우 중국 농업농촌부는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서면형식의 설명서(국제총톤수와 국내등록톤수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중국 농업농촌부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한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송부서(送付書)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집계표(集計表)와 허가신청서 일체를 대한민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이하 “주한중국대사관”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허가증의 교부 및 비치

- ① 한국 해양수산부는 제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받은 후 14일(만약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이행 불가 시에는 상대측에 통보한다) 이내에 허가를 신청한 어선(부속선을 포함한다)마다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발급하고, 이를 주한중국대사관을 경유하여 중국 농업농촌부에 교부한다. 다만, 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하여 중국 농업농촌부에 이를 조회, 확인할 수 있다. 연락번호 : 86-10-5919-4145, 다만, 오징어채낚기 어선, 오징어채낚기 운반선, 오징어채낚기 보급선 연락번호 : 86-580-3698277

- ② 한국 해양수산부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후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적당한 방식을 통하여 직접 중국의 농업농촌부에 연락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역에서의 어업활동의 허가를 받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및 어선(이하 “중국허가어선”이라 한다)은 당해 허가증을 허가받은 어선의 선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④ 한국 해양수산부는 중국허가어선에 대한 어업활동허가번호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 법률(이하 “EEZ어업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1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 ⑤ 한국 해양수산부가 발급한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허가신청인이 제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도 동일선박으로 동일 어업종류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의 어업활동허가번호를 부여한다.

제3조 허가증의 재교부

- ① 중국의 입어신청자가 한국해양수산부로부터 교부받은 허가증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송부서와 함께 중국 농업농촌부를 통하여 한국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허가증망실(忘失)한 경우
 - 2. 허가증이 훼손(毀損)되어 못쓰게 된 경우
 - 3. 허가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 4. 허가받은 어선의 명칭 또는 신청인이 변경된 경우

5. 제5조 제1항의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허가증 사본(제1항 제1호, 제2호는 제외)
2. 어업활동허가신청서 및 선박국적증서(혹은 선박등록증서) 사본 각1부, 혹은 어업활동허가신청서와 주선의 선박국적증서(혹은 선박등록증서) 사본 각1부, 별지 제2-1호 서식 부속선 정보 원본
3. 제1항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6-2호 서식의 허가증 분실, 훼손 사유서

③ 한국 해양수산부는 중국 농업농촌부에서 제출한 허가증재교부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교부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만약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이행 불가 시에는 상대측에 통보한다)에 허가증을 재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번호는 당초의 허가증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선박과 신청인이 동시에 변경된 경우 새로운 허가번호를 부여한다.

④ 중국 농업농촌부는 제1항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사유로 인하여 재교부된 어업활동허가증을 허가신청인에게 전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달과 동시에 기존 어업활동허가증 원본을 반납하도록 하고, 이를 즉시 한국 해양수산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한 어선의 어획할당량은 기존 허가받은 어선의 어획할당량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기존 허가받은 어선이 당해 연도에 어획한 어획량은 허가증을 재교부 받은 어선이 어획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허가증의 반납

중국 농업농촌부는 중국허가어선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증을 한국해양수산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허가받은 어선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허가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변경된 경우
4.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
5.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제5조 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

① 중국 허가어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 기재내용의 변경신고서를 중국 농업농촌부를 통하여 한국 해양수산부에 이메일(E-MAIL)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 이용) 제출하여야 한다.

1. 숫자 또는 문자 등 단순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2. 조업조건상의 어선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3. 호출부호 또는 긴급호출 무선전화주파수를 변경한 경우
4. 선창 용적을 변경한 경우
5. 선박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메일은 nffc_rs@suhyup.co.kr이며, 이메일 오류시 팩스(FAX)는 대한민국 서울 82-2-2240-3032, 82-2-2240-3027로 송부한다.

③ 한국 해양수산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고,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④ 중국 농업농촌부는 한국측에서 발급한 허가증 내용이 중국측에서 제출한 조업허가 신청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7-2호 서식의

“허가처분사항 정정요청서” 및 허가증 사본을 한국 해양수산부에 이메일(E-MAIL)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 이용) 제출하고, 한국 해양수산부는 기재내용이 정확한 허가증을 조속히 발급하도록 한다. 기재내용의 오류가 있는 허가증을 발급받은 어선은 신규허가증 발급 이전까지는 기존 허가증으로 조업할 수 있다.

제6조 입·출역 정보의 제출

- ① 중국 허가어선은 한국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관련정보를 기재하여 중국 농업농촌부를 통하여 대한민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한국수협중앙회”라 한다)에 제5조 제2항의 연락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메일 오류시 팩스 이용)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출역 정보의 위치는 대한민국 EEZ 경계선상으로 하여야 하며(다만, EEZ 경계선을 통과하는 실제 위치와 통과예정 위치와의 오차범위는 3해리이내), 다음 각 호의 시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시각의 적용기준은 선적국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규칙에서의 시간은 선적국 표준시를 말한다) 또한, 입·출역 정보에 의문이 있을 경우 이메일(E-MAIL)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 이용) 조회하고, 그 중 오징어채낚기 어선, 오징어채낚기 운반선, 오징어채낚기 보급선의 FAX 번호는 86-580-369880, E-MAIL은 yhn-740503@163.com, 기타 선박의 FAX번호는 86-10-5919-4125, E-MAIL은 chinacraa@126.com 이며 조회를 받은 중국 농업농촌부는 이메일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 이용)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
 1. 입역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입역 12시간 이전까지. 다만, 중국허가 어선이 조업 중 어장형성 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하게 한국수역에 입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역 2시간 이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출역하는 경우 : 출역후 24시간 이내

- ③ 중국허가어선이 1일(24시간)내에 여러 차례 입·출역을 반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입·출역 정보는 각각 1회만 통보할 수 있다.
- ④ 선망어선과 2척식저인망어선이 1선단(統)으로 동시에 입·출역하는 경우에는 본선과 부속선의 허가증 번호 및 어선의 명칭을 같이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선이 선단과는 별도로 입·출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입·출역시마다 입·출역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중국허가어선이 통보된 입·출역 정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출역통보기호(IN 또는 OUT)에 “CORRECT”의 기호를 붙여서 정정 전의 정보 및 정정 후의 정보를 제출한다. 이때 정정 후의 정보는 밑줄(_)로서 구분한다.
- ⑥ 한국수역에 입·출역을 통보한 중국허가어선이 실제로 입역 또는 출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통보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우측상단에 “입역취소” 또는 “출역취소”를 기재하여 즉시 모사전송으로 다시 통보한다.
- ⑦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한국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실시요령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 ① 중국 농업농촌부는 한국수역에 입역하는 중국허가어선의 선장이 보고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어업활동의 종류 및 조업일자별로 취합·정리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보고서(이하 “일일보고서”라 한다)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이메일(E-MAIL)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 (제5조 제2항의 연락처와 같다)으로 한국수협중앙회에 보고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어업으로 상대국 지도선에 나포되어 상대국 영해나 항내에 입항할 경우 일일 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나포가 해제된 경우 조업절차에 따라 일일보고를 한다.

1. 어업활동의 종류
 2. 허가증번호
 3. 어선의 명칭
 4. 당일 정오 12시의 위치(GPS 상의 위도와 경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선망(圍網)어업 및 오징어채낚기(魷釣)어업은 당일 00시의 위치
* 한국수역에서 입어조업 후 출역하는 어선은 출역 시점의 시간과 위치를
별지 9서식에 따라 보고(1회에 한함)하여야 한다.
 5. 전일 정오 12시부터 당일 정오 12시까지의 어종별(Code) 어획량
(소수점이하 반올림) : 단위(Kg)(부속선과 일반어획물운반선은
기재하지 아니 한다)
 6.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보고일까지의 총 어획량의 누계 : 단위
(kg)(부속선과 일반어획물운반선은 기재하지 아니 한다)
- ② 일반어획물운반선은 별지9-1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며, 보고절차는
제1항과 동일하게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보고서는 입역한 날로부터 출역한 날까지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다음날 24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어선이 조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업은 했으나 어획물이 없을 경우
에도 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국 농업농촌부 및 중국허가어선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일일보고서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제6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속히 정정된 보고서를 재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일일
보고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이메일(E-MAIL)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
이용) 조회하고, 연락처는 제6조제2항을 참조한다. 조회를 받은 중국
농업농촌부는 신속히 이메일(E-MAIL)로 (이메일 오류시 팩스이용)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 조업일지의 기록

- ① 한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허가어선은 어업활동의 종류별로 별지 제10-1호(일반어획물운반선), 10-2호(타망), 10-3호(위망), 10-4호(유망), 10-5호(우조) 서식에 의한 조업일지 작성예에 따라 인쇄 제작된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일지는 유성필기구를 사용하여 한국수역에 입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각까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조업일지의 기재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 그 상단에 수정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수정한 사람은 수정한 내용 우측의 적당한 여백에 명확하게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④ 중국허가어선이 한국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제품을 신고 한국수역에 입역하는 경우에는 조업일지의 비고란에 한국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제품의 종류 및 중량을 기재 하여야 한다.
- ⑤ 부속선은 해당분야의 어업활동 내용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⑥ 동일한 어선으로 2이상의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어업활동의 종류마다 조업일지를 작성하고 소지하여야 한다.
- ⑦ 조업일지는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조업일지의 관리

- ① 중국허가어선은 당해 연도의 전체 조업일지를 항상 선내에 비치 하여야 한다.
- ② 각 조업일지는 제본된 인쇄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업활동의 종류별로 끈으로 묶은 후 매 쪽마다 번호를 붙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조업일지의 기록에 대하여는 선장이 책임을 지며, 선장은 매일 조업 일지에 기록된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④ 선장은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검사공무원 등이 당해 어선의 조업일지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어획량의 할당 및 변경

- ① 중국 농업농촌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통보한 어업활동의 종류별 어획할당량 범위 내에서 어선별 어획할당량을 결정하여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중국허가어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별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어획할 수 없다. 다만, 조업종료 직전에 투망 또는 투승한 어구를 양망 또는 양승하여 어획한 어획물의 량(量)이 당해 어선의 어획할당량의 5% 범위 내에서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도 중국허가어선이 한국수역에 입어하여 어획한 어획물의 총량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통보한 어업활동의 종류별 어획할당량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중국 농업농촌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허가된 어선별 어획할당량의 증가 또는 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허가어선중 동일업종의 어선간에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중국 농업농촌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별 어획할당량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송부서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어획할당량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한국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한국 해양수산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할당량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어획할당량 변경증명서를 교부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획할당량 변경증명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증과 함께 취급되어야 하며, 어선의 선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번호의 표시

- ① 중국 농업농촌부는 중국허가어선에 대하여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허가번호를 별지 제14호 서식의 예시와 같이 표지판에 표기하여 선체의 조타실 양측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선명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은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도색(塗色)되어야 하며, 훼손(毀損), 은폐(隱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단속실시에 관련된 사항

중국허가어선은 한국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EEZ어업법 시행규칙 별표3의 “1. 일반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공무원의 지도·단속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조업금지해역 및 조업금지기간 중에 항해중인 어선은 어구를 격납하고 덮개를 씌워야 한다.
3.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어선에 옮겨 실거나 다른 어선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영해 포함)
 - ① 위급(危急)한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② 한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조업해역 및 조업시기에 한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는 경우
4. 어선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선원의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서(中華人民共和國 居民身分證 포함) 및 승무원명부, 어창을 가지고 있는 어선은 허가신청자의 인증인(認證印)을 붙인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을 소지하여야 한다.
5. 그물코의 크기(網目)가 제한되어 있는 어구의 그물코 크기의 측정은 길이방향으로 하고, 연속한 10개의 그물코(침수후 당겨서 망목이 상하로 붙어 일직선이 된 내경)를 각각 측정한 값의 평균치로 한다.

6. 어선에 적재한 어획물과 조업일지에 기재된 어획량의 오차허용범위는 냉동 어획물과 신선 어획물은 $\pm 5\%$, 얼음을 넣어 처리하는 빙장어획물은 $\pm 10\%$ 이내 이어야 한다.
7. 쇠창살, 철망 등 공무원의 승선조사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장과 선원은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임검 등을 위해 승선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함과 아울러, 관계공무원이 선상에 있는 구명환·안전사다리·보트 혹은 기타 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장과 선원은 반드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공무원의 검사 및 검사의 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8. 조업어선은 국적과 관계없이 어장에 먼저 도착한 순서에 따라 조업할 수 있으며, 여러 어선들이 일정수역에서 동시에 조업하는 경우에는 어선간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조업하고 반드시 해상충돌예방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로 타 어선의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9. 조업 어선간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귀국 후 관련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해상에서의 싸움, 파괴, 약탈, 구류 등의 불법 행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13조 효력의 발생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조업일지에 기재할 어종별 코드

번호	어업활동의 종류	기재할 어류의 종류(영명, 코드)
1	타망(拖網) 어업	아귀류(Goosefish, 101), 가자미류(Flounders, 103), 갈치(Hairtail, 104), 멸치(Anchovy, 131), 병어류(Pomfrets, 139), 삼치(Spanish mackerel, 147), 장어류(Eel, 159), 참조기(Yellow croaker, 163), 오징어류(Squids, 403), 기타(Others, 199)
2	유망(流網) 어업	삼치(Spanish mackerel, 147), 참조기(Yellow croaker, 163), 기타 조기류(Others croaker, 164), 게류(Crab, 302), 기타(Others, 199)
3	위망(圍網) 어업	고등어(Mackerel, 106), 전갱이(Horse mackerel, 128), 삼치(Spanish mackerel, 147), 오징어류(Squids, 403), 기타(Others, 199)
4	오징어채낚기(魷釣) 어업	오징어류(Squids, 403), 기타(Others, 199)
5	일반어획물 운반선(一般漁獲物運搬船)	아귀류(Goosefish, 101), 가자미류(Flounders, 103), 갈치(Hairtail, 104), 고등어(Mackerel, 106), 전갱이(Horse mackerel, 128), 멸치(Anchovy, 131), 병어류(Pomfrets, 139), 삼치(Spanish mackerel, 147), 장어류(Eel, 159), 참조기(Yellow croaker, 163), 기타 조기류(Others croaker, 164), 게류(Crab, 302), 오징어류(Squids, 403), 기타(Others, 199)

[별지 제1호 서식]

일련번호	
최종년도 허가번호	

어업 활동 허가 신청서

1. 어선의 명칭 및 어선 등록번호 _____ (로마자 및 아라비아숫자)

.....

2. 어업활동의 종류 _____ (Code) 3. 어선의 국적 및 선적항 _____ (로마자)

.....

4. 어선의 제원 : 국제총톤수 _____ 톤, 어선등록톤수 _____ 톤, 주기관수 _____ 대,
기관출력 _____ 마력, 최대속력 _____ 노트, 길이 _____ m , 폭 _____ m, 깊이 _____ m

5. 신청인 성명 또는 회사명 _____ (로마자)

.....

주 소 _____ (로마자)

.....

6. 선장의 성명 _____ (로마자) 7. 최대 승무원 수 _____ 명

.....

8. 무선전신의 방법
호출부호 _____ 긴급호출 무선 전신 연락주파수 _____ 무선전화주파수 _____

9. 화물의 적재가능 용량
어 창 : 냉장 _____ 개(_____ m³), 냉동 _____ 개(_____ m³)
급수탱크 : _____ 개(_____ m³), 급유탱크 : _____ 개(_____ m³)

10. 허가신청의 내용

조업수역	포획대상물 또는 어업활동 대상업종	사용어구	조업기간	어획할당량 (kg)
			~	
			~	
			~	

11. 부속선의 총 척수 _____ 척

※ 첨부서류 :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박등록증서 사본 1부, 부속선의 선별 내역서 1부.

작성요령

1. 본 서식의 모든 기재사항은 어업활동을 하는 어선(附屬船을 사용하는 어업활동의 경우에는 본선(本船)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부속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별도로 기재하여 첨부한다.
2. ‘.....’ 부분은 중국어로 기재(記載)하고, 로마자 부분은 중국어로 발음되는 알파벳을 표기한다.
3. ‘최종년도 허가번호’ 란은 어업허가 신청어선이 과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어선의 최종 허가번호를 기재한다.
4. ‘어선의 명칭’ 란은 중국어 및 로마자로 기재하고 ‘어선등록번호’ 란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이하 같다)
5. ‘어업활동의 종류’ 란은 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어업활동의 종류 및 어업의 형태를 다음 Code(略號)로 기재한다.

어업활동의종류	어업의 형태	영 문	Code(略號)
저인망(拖網)어업	2척식저인망(雙船拖網)	PAIR TRAWL	PT
	1척식저인망(展開板 使用) (單拖網)	OTTER TRAWL	OT
	1척식저인망(형간사용) (單拖網)	BEAM TRAWL	BT
선망(圍網)어업	선망어업	PURSE SEINE	PS
유망(流網)어업	유자망 또는 고정식자망	GILL NET	GN
오징어채낚기(魷釣) 어업	오징어채낚기(魷釣)어업	SQUID JOGGING	SJ
어획물 운반선 (일반어획물운반선)	어획물의 운반·보급	FISH CARRIER	FC

6. ‘어선의 제원(諸元)’ 란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7. 신청인의 ‘주소’ 란은 성·시·구·진까지만 기재한다.
8. ‘무선전신의 방법’ 란은 아라비아 숫자 및 로마자로 기재한다.
9. ‘화물의 적재가능 용량’란은 ‘수량’ 및 ‘용량’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10. '허가신청의 내용' 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조업수역' 란은 한국수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Code로 기재한다.

- (1) 동경128도 이동의 동해 및 남해수역 : I
- (2) 동경128도 이서 및 북위34도 이남의 수역 : II
- (3) 북위 34도 이북의 서해수역 : III
- (4) 대형트롤금지구역선과 대형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사이 수역 (雙拖網에 한함) : IV

나. '포획대상물 또는 어업활동대상업종' 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1)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설정된 어종을 중국어 및 본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라비아 숫자 코드(Code)를 기재한다.
- (2) 어획물의 운반, 보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의 조업조건"에 허가된 어업활동의 종류 중 당해 운반선이 어획물의 운반, 보급 등을 하고자 하는 어업활동의 종류를 코드(Code)로 기재한다.

다. '사용어구'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라. '조업기간' 란은 실제로 조업할 예정기간을 기재한다.

마. '어획할당량' 란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 '포획대상물'의 란에 기재된 어종마다 어획할당량을 아라비아 숫자로 Kg 단위까지 기재하고, 어획물의 운반·보급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선을 긋는다.

[별지 제2호 서식]

부속선(附屬船)의 선별내역(船別內譯)

본선의 명칭 : (로마자)

.....

일련번호	최종년도 허가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등록번호	선적항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주소	총톤수(톤)	기관마력	최대속력
		(로마자)		(로마자)	(로마자)	(로마자)			
				

부속선의 종류	어창의 수량 및 용적			호출부호	무선전화주파수
	구분	수량(개)	용적(m ³)		
	냉장				MHz
	냉동				KHz

작성요령

1. '일련번호' 란은 허가신청서 좌측상단의 일련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한다.
2. '.....' 부분에 대하여는 중국어로 기입하고, 로마자부분은 중국어로 발음되는 알파벳을 표기한다.
3. '부속선의 종류' 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Code(略號)로 기재한다.

부속선의 종류	영문	Code(약호)
2척식저인망(雙船拖網)의 종선	PAIR TRAWL'S SUPPORT VESSEL	PT-S
선망(圍網)의 등선	PURSE SEINE'S LIGHT VESSEL	PS-L
선망(圍網)의 운반선	PURSE SEINE'S FISH CARRIER VESSEL	PS-C

4. 기타 기재사항은 어업활동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어업활동허가신청서 집계표

○ 어업활동의 종류

일련 번호	최종 년도 허가 번호	신청인의 성 명	어선의 명 칭	어종별 어획할당량(kg)											
				코 드	코 드	코 드	코 드	코 드	코 드	코 드	코 드	코 드	코 드	기타	계
		(로마자)	(로마자)												
													
													
													
합계			(척)												

작성요령

1. 이 집계표는 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어선(부속선 포함)에 대하여 어업활동의 종류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란에는 총척수 및 총어획할당량의 합계를 기재한다.
2. ‘.....’ 부분은 중국어로 기재하고, 로마자 부분은 중국어로 발음되는 알파벳을 표기한다.
3. ‘최종년도 허가번호’ 란은 어업허가 신청어선이 과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어선의 최종 허가번호를 기재한다.
4. ‘어업활동의 종류’ 란은 어업활동허가신청서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코드(Code)로 기재한다.
5. ‘일련번호’ 란은 허가신청서 좌측상단의 일련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 ‘어종별 어획할당량’ 중 어종명은 어업의 종류별로 할당된 어종에 대하여 본 규칙 별표1에 의한 어종별 아라비아 숫자의 코드를 기재한다.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허가증

(在大韩民国专属经济区 渔业捕捞许可证)

1. 허가증번호

(许可证号码)

2. 어선의 명칭 및 등록번호

(渔船名称及船舶登记号码)

3. 어업활동의 종류

(作业类型)

4. 어선의 국적 및 선적항

(渔船的国籍及船籍港)

5. 어선의 제원

(渔船情况)

국제총톤수

(国际总吨位)

_____ 톤

(吨)

기관의 출력

(主机功率)

_____ 마력

(马力)

최대속력

(最大航速)

_____ 노트

(节)

6. 어업자의 성명

(被许可人姓名)

주소

(地址)

7. 무선전신의 방법

(无线电通讯方式)

호출부호

(电呼符号)

긴급호출 무선전신 연락주파수

(紧急呼叫无线电频率)

무선전화주파수

(无线电话频率)

8. 화물의 적재가능 용량 (船舱容积)

어창의 종류 (鱼舱种类)	수량 (数量.)	용량 (容积) (m ³)
냉장(冷藏)		
냉동(冷冻)		

9. 허가내용
(许可内容)

사용어구의 종류 및 수량 _____
(使用渔具的种类及数量)

조업사항 (作业事项)

조업수역 (作业水域)	포획대상물 또는 어업활동대상업종 (捕获对象或渔业活动对象作业类型)	조업기간 (作业时间)	어획할당량(톤) (渔获配额量) (吨)
		-	
		-	
		-	
		-	
		-	
		-	
총어획할당량 (总渔获配额量)			

10. 제한 또는 조건
(限制或条件)

대한민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 제2조제2항 부속서 I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통보한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입어에 관한 절차규칙” 및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의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中国渔船遵守根据大韩民国政府和中华人民共和国政府渔业协定第二条第二款, 附件 I 及第三条第一款的规定, 大韩民国政府向中华人民共和国政府通报的“在大韩民国专属经济区, 中华人民共和国渔船的入渔的程序规则”及“在大韩民国专属经济区中华人民共和国渔船的作业条件”。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을 허가합니다.

根据关于在专属经济区对外国人的渔业活动行使主权利的法律第五条第一款的规定, 许可上述船舶在大韩民国专属经济区进行渔业活动。

년 월 일
(年) (月) (日)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인)

(大韩民国 海洋水产部长官)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1. 허가증번호 _____

2. 허가를 받은 자

성명 _____ (로마자)

주 소

3. 어선의 명칭 _____ (로마자)

4. 어업활동의 종류 _____

5. 재교부 신청사유 _____

- ※구비서류 : 1. 허가증 사본 1부.(A 및 B 제외)
2. 어업활동허가신청서 및 선박국적증서(혹은 선박등록증서) 사본 각 1부, 혹은 어업활동허가신청서 및 주선의 선박국적증서(혹은 선박등록증서) 사본 각 1부, 별지 제2-1호 서식 부속선 정보 원본 1부
3. 어업활동허가증을 분실, 훼손한 경우 별지 제6-2호 서식의 허가증 분실, 훼손 사유서 1부.

작성요령

1. ‘.....’ 부분은 중국어로 기재하고, 로마자 부분은 중국어로 발음되는 알파벳으로 표기한다.
2. ‘허가증 번호’ 란은 당초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여받은 허가번호를 기재한다.
3. ‘허가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란은 중국어 및 중국어로 발음되는 알파벳으로 표기한다.

4. '어업활동의 종류' 및 '어선의 명칭' 란은 어업활동허가신청서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5. '재교부 신청사유'란은 다음과 같이 코드(Code)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가. 허가증을 망실한 경우 : A
 - 나. 허가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 B
 - 다. 허가받은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 C
 - 라. 허가받은 어선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D
 - 마. 허가받은 어선의 허가신청인이 변경된 경우 : E
 - 바. 제5조 제1항의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F

허가증 분실, 훼손 사유서

1. 허가증번호 _____

2. 허가를 받은 자

성 명 _____ (로마자) _____ (서명)

.....

주 소 _____ (로마자) _____ (서명)

.....

3. 어선의 명칭 _____ (로마자) _____

.....

4. 어업활동의 종류 _____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동 허가증 원본을 분실·훼손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허가증 원본을 반납할 수 없습니다.

확인

년 월 일

작성요령

1. '.....' 부분은 중국어로 기재한다.
2. '확인' 은 지방 어업행정 주관 부서의 직인을 날인한다.

[별지 제7-1호 서식]

허가증 기재내용의 변경신고서

1. 일반사항

- (1) 어선의 명칭
- (2) 허가증 번호

2. 변경내용

- (1) 변경전의 기재사항
- (2) 변경후의 기재사항

3. 변경사유

4. 신청자 성명

5. 처리인의 서명 및 FAX 번호

6. 발신년월일

[별지 제7-2호 서식]

허가처분사항 정정요청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다음 허가에 대하여는 허가를 신청한대로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아 정정을 요청하오니 조업허가증을 다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어선명칭	허가증번호	허가신청	허가증 발급	비 고

첨부 : 허가증 사본 1부.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국장 (인)

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입·출역 정보의 제출서식

가. 입역시 서식

<IN>

어업활동의 종류	허가증번호	어선의 명칭 (로마자)	입역예정시간 년 월 일 시	입역예정위치	
				경·위도	조업수역코드
				위도 경도	

보고당시의 시간 및 위치		보고당시의 어획물 적재상황		승무원 수
시간	어선의 위치	어획물 주요어종	적재량(kg)	
년 월 일 시	위도 경도			

나. 출역시 서식

<OUT>

어업활동의 종류	허가증번호	어선의 명칭 (로마자)	출역시간 년 월 일 시	출역위치	
				경·위도	조업수역코드
				위도 경도	

보고당시의 시간 및 위치		보고당시의 어획물 적재상황		승무원 수
시간	어선의 위치	어획물 주요어종	적재량(kg)	
년 월 일 시	위도 경도			

작성요령

1. '어업활동의 종류' 란은 어업활동허가신청서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Code로 기재한다.
2. '허가증번호' 란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여한 허가증 번호를 기재한다.
3. '어선의 명칭' 란의 '.....' 부분은 중국어로 기재하고, 로마자 부분은 중국어로 발음되는 알파벳을 표기한다.
4. '입역예정시간 및 출역시간' 란은 대한민국 EEZ 경계선상을 통과하는 시간을 기재하며, '입역예정위치 및 출역위치'의 "경위도" 란은 대한민국 EEZ 경계선상을 통과하는 경·위도를 기재(다만, EEZ 경계선을 통과하는 실제 위치와 통과예정위치와의 오차범위는 3해리이내)하며, "조업수역 코드" 란은 한국수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Code로 기재한다.
 - (1) 동경128도 이동의 동해 및 남해수역 : I
 - (2) 동경128도 이서 및 북위34도 이남의 수역 : II
 - (3) 북위 34도 이북의 서해수역 : III
 - (4) 대형트롤금지구역선과 대형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사이 수역(雙拖網에 한함) : IV
5. '보고당시의 시간 및 위치'와 '보고당시의 어획물 적재상황'은 입역보고 또는 출역보고 당시의 시간, 위치, 어획물 적재상황을 기재하며, 어획물 적재 상황 중 '어획물 주요어종'은 본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어종별 코드로 기재한다.
6. '승무원 수' 란은 현재 승선중인 승무원의 수를 기재하되, 어업활동허가 신청서에 등재된 최대 승무원 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선망어선과 2척식저인망어선이 1선단(統)으로 동시에 입·출역하는 경우에는 본선과 부속선의 허가증번호 및 어선의 명칭을 같이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선이 선단과는 별도로 입·출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입·출역시마다 입·출역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서

어업활동의 종류		조업기간							
		20년 월 일 12:00부터				월 일 12:00까지			
허가증번호	어선의 명칭	정오위치 (자정위치)	어종별 어획량(kg)						
			구분	계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로마자)	N00°00.0' E000°00.0'	당일						
			누계						
	(로마자)	N00°00.0' E000°00.0'	당일						
			누계						
합 계			당일						
			누계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작성요령

1. 이 보고서는 어업활동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어업활동의 종류' 및 '어선의 명칭' 란은 어업활동허가신청서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3. '어종별어획량' 란중 '당일' 란은 전일 정오 12시부터 당일 정오 12시까지 어획한 수량을 kg으로 기재하며, '누계' 란은 동일한 어선이 당해연도 조업시작일부터 보고하는 당일까지의 어획량 누계를 기재한다. 다만, 부속선과 일반어획물운반선은 '어종별어획량'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4. '정오위치(자정위치)' 란은 당일 정오 12시의 위치를 GPS에 나타나는 위도 및 경도("분"이하는 소숫점이하 두자리에서 사사오입)로 기재한다. 다만, 선망(圍網) 및 오징어채낚기(魷釣) 어선은 당일 00시의 위치를 기재한다.
- * 한국수역에서 입어조업 후 출역하는 어선은 출역 시점의 시간과 위치를 보고 (1회에 한함)하여야 한다.

5. '어종별어획량' 란중 '코드' 란은 어업활동 종류별 어류의 종류를 다음 코드(Code)로 구분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어업활동의 종류	보고할 어류의 종류 및 코드(Code)
타망(拖網)어업	아귀류(101), 가자미류(103), 갈치(104), 멸치(131), 병어류(139), 삼치(147), 장어류(159), 참조기(163), 오징어류(403), 기타(199)
위망(圍網)어업	고등어(106), 전갱이(128), 삼치(147), 오징어류(403), 기타(199)
유망(流網)어업	삼치(147), 참조기(163), 기타조기류(164), 게류(302), 기타(199)
오징어채낚기(魷釣)어업	오징어류(403), 기타(199)

[별지 제9-1호 서식]

일일 위치 및 전채실적 보고서(일반운반선)

20 년 월 일 12:00부터 월 일 12:00까지

운반선 제원 및 위치			전채 받은 어선의 제원		
허가증번호	운반선의 명칭	정오위치	허가증번호	어선의 명칭	전채량(kg)
	(로마자)	N00°00.0' E000°00.0'			
	(로마자)	N00°00.0' E000°00.0'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작성요령>

1. 이 보고서는 일반어획물운반선이 작성하여야 한다.
2. '운반선의 명칭' 및 '어선의 명칭' 란은 어업활동허가신청서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3. '어획물 전채량의' 란은 전일 정오 12시부터 당일 정오 12시까지 전채한 어획량 수량을 kg으로 기재한다.
4. '정오위치' 란은 당일 정오 12시의 위치를 GPS에 나타나는 위도 및 경도 ("분"이하는 소숫점 이하 두자리에서 사사오입)로 기재한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조업일지(타망)

어선의 명칭 :			허가증 번호 :				년 월 일 (전일 정오부터 당일 정오까지)										
조업 회수	조업개시		조업종료		어종별어획량(단위:Kg)										비 고		
	시간 (시:분)	위치 (경도·위도)	시간 (시:분)	위치 (경도·위도)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기타		합계	
1	:	N ° '	:	N ° '													
2	:	N ° '	:	N ° '													
3	:	N ° '	:	N ° '													
4	:	N ° '	:	N ° '													
5	:	N ° '	:	N ° '													
6	:	N ° '	:	N ° '													
일계(전일정오~당일정오의 어획량)																	
누계(일계를 누계하여 기재)																	

어획물 및 그 제품을 다른 어선에 전재(轉載) 또는 다른 어선으로부터 적재(積載)

선명	허가증 번호	시간 (시:분)	위치 (위도경도)	어종별 전재(적재)량 (단위:Kg)										비 고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기타	합계			
		:	N ° '													

기재자 성명 인 인 선장 서명 인

작성요령

1. '조업개시'란은 투망 또는 투승 개시시각과 위치를, '조업종료'란은 양망 또는 양승완료시각과 위치를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어종별어획량'란은 전일정오부터 당일정오까지의 어획량을 기재합니다. 정오에 걸쳐 조업하는 때에는 조업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조업일지는 어업활동의 종류별로 제본(製本)된 인쇄물을 사용하거나 끈으로 묶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4. 선장은 매일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수정한 경우에는 '비고'란 또는 우측 적당한 여백에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
5.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이외의 장소에서의 어획물을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그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대한민국EEZ 외측수역"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6. '어종별 어획량' 및 '어종별 전재(적재)량'의 '코드'는 본 절차규칙 별표1에 의한 어종별 코드를 기재합니다.
7. 조업일지의 각란에는 공란이 없어야 하며, 기재할 내용이 없을 때에는 사선 또는 수평선으로 그어야 합니다.
8. 조업일지는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조업일지(위망)

어선의 명칭 :		허가증 번호 :				년 월 일 (전일 정오부터 당일 정오까지)										
조업 회수	조업개시		조업종료		어종별어획량(단위:Kg)									비 고		
	시간 (시:분)	위치 (경도·위도)	시간 (시:분)	위치 (경도·위도)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기타		합계	
1	:	N ° '	:	N ° '												
2	:	N ° '	:	N ° '												
3	:	N ° '	:	N ° '												
4	:	N ° '	:	N ° '												
5	:	N ° '	:	N ° '												
6	:	N ° '	:	N ° '												
일계(전일정오 ~ 당일정오의 어획량)																
누계(일계를 누계하여 기재)																

어획물 및 그 제품을 다른 어선에 전재(轉載) 또는 다른 어선으로부터 적재(積載)

선명	허가증 번호	시간 (시:분)	위치 (위도경도)	어종별 전재(적재)량 (단위:Kg)										비 고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기타		합계
		:	N ° '												

기재자 성명 인 인 선장 서명 인

작성요령

1. '조업개시'란은 투망 또는 투승 개시시간과 위치를, '조업종료'란은 양망 또는 양승완료시간과 위치를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어종별어획량'란은 전일정오부터 당일정오까지의 어획량을 기재합니다. 정오에 걸쳐 조업하는 때에는 조업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조업일지는 어업활동의 종류별로 제본(製本)된 인쇄물을 사용하거나 끈으로 묶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4. 선장은 매일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수정한 경우에는 '비고'란 또는 우측 적당한 여백에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
5.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이외의 장소에서의 어획물을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그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대한민국EEZ 외측수역"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6. '어종별 어획량' 및 "어종별 전재(적재)량"의 '코드'는 본 절차규칙 별표1에 의한 어종별 코드를 기재합니다.
7. 조업일지의 각란에는 공란이 없어야 하며, 기재할 내용이 없을 때에는 사선 또는 수평선으로 그어야 합니다.
8. 조업일지는 매 조업종료후 2시간 이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조업일지(유망)

어선의 명칭 :			허가증 번호 :				년 월 일 (전일 정오부터 당일 정오까지)									
조업 회수	조업개시		조업종료		어종별어획량(단위:Kg)								비 고			
	시간 (시:분)	위치 (경도·위도)	시간 (시:분)	위치 (경도·위도)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기타	합계	
1	:	N ° ' E ° '	:	N ° ' E ° '												
2	:	N ° ' E ° '	:	N ° ' E ° '												
3	:	N ° ' E ° '	:	N ° ' E ° '												
4	:	N ° ' E ° '	:	N ° ' E ° '												
5	:	N ° ' E ° '	:	N ° ' E ° '												
6	:	N ° ' E ° '	:	N ° ' E ° '												
일계(전일정오 ~ 당일정오의 어획량)																
누계(일계를 누계하여 기재)																

어획물 및 그 제품을 다른 어선에 전재(轉載) 또는 다른 어선으로부터 적재(積載)

선명	허가증 번호	시간 (시:분)	위치 (위도경도)	어종별 전재(적재)량 (단위:Kg)								비 고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기타	합계	
		:	N ° ' E ° '												

기재자 성명 인 인 선장 서명 인

작성요령

1. '조업개시'란은 투망 또는 투승 개시시간과 위치를, '조업종료'란은 양망 또는 양승완료시간과 위치를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어종별어획량'란은 전일정오부터 당일정오까지의 어획량을 기재합니다. 정오에 걸쳐 조업하는 때에는 조업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조업일지는 어업활동의 종류별로 제본(製本)된 인쇄물을 사용하거나 끈으로 묶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4. 선장은 매일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수정한 경우에는 '비고'란 또는 우측 적당한 여백에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
5.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이외의 장소에서의 어획물을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그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대한민국EEZ 외측수역"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6. '어종별 어획량' 및 "어종별 전재(적재)량"의 '코드'는 본 절차규칙 별표1에 의한 어종별 코드를 기재합니다.
7. 조업일지의 각란에는 공란이 없어야 하며, 기재할 내용이 없을 때에는 사선 또는 수평선으로 그어야 합니다.
8. 조업일지는 매 조업종료후 2시간 이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조업일지(우조)

어선의 명칭 :		허가증 번호 :				년 월 일 (전일 정오부터 당일 정오까지)									
조업 회수	조업개시		조업종료		어종별어획량(단위:Kg)								비 고		
	시간 (시:분)	위치 (경도·위도)	시간 (시:분)	위치 (경도·위도)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기타	합계
1	:	N ° '	:	N ° '											
2	:	N ° '	:	N ° '											
3	:	N ° '	:	N ° '											
4	:	N ° '	:	N ° '											
5	:	N ° '	:	N ° '											
6	:	N ° '	:	N ° '											
일계(전일정오 ~ 당일정오의 어획량)															
누계(일계를 누계하여 기재)															

어획물 및 그 제품을 다른 어선에 전재(轉載) 또는 다른 어선으로부터 적재(積載)

선명	허가증 번호	시간 (시:분)	위치 (위도경도)	어종별 전재(적재)량 (단위:Kg)								비 고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코드		기타	합계
		:	N ° '											

기재자 성명 인 인 선장 서명 인

작성요령

1. '조업개시'란은 투망 또는 투승 개시시간과 위치를, '조업종료'란은 양망 또는 양승완료시간과 위치를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어종별어획량'란은 전일정오부터 당일정오까지의 어획량을 기재합니다. 정오에 걸쳐 조업하는 때에는 조업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조업일지는 어업활동의 종류별로 제본(製本)된 인쇄물을 사용하거나 끈으로 묶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4. 선장은 매일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수정한 경우에는 '비고'란 또는 우측 적당한 여백에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
5.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이외의 장소에서의 어획물을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그 어종별 어획량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대한민국EEZ 외측수역"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6. '어종별 어획량' 및 "어종별 전재(적재)량"의 '코드'는 본 절차규칙 별표1에 의한 어종별 코드를 기재합니다.
7. 조업일지의 각란에는 공란이 없어야 하며, 기재할 내용이 없을 때에는 사선 또는 수평선으로 그어야 합니다.
8. 조업일지는 매 조업종료후 2시간 이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어획할당량 변경신청서 송부서

문서번호 :

시행일 :

수신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

제목 :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할당량 변경신청서 제출

중화인민공화국어선의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입어에관한절차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 외 ()척의 어획할당량을
변경하고자 변경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어획할당량 변경신청서 () 부. 끝.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국장 (인)

어획할당량 변경 신청서

1. 어업활동의 종류
2. 어선간 변경후의 어획할당량 내역

(1) 어획할당량이 감소하는 어선

허가증번호	어선의 명칭	변경전 어종별 어획할당량(톤)	남은 어종별 어획할당량(톤)	변경후 어종별 어획할당량(톤)	감소된 어종별 어획할당량(톤)
	(로마자)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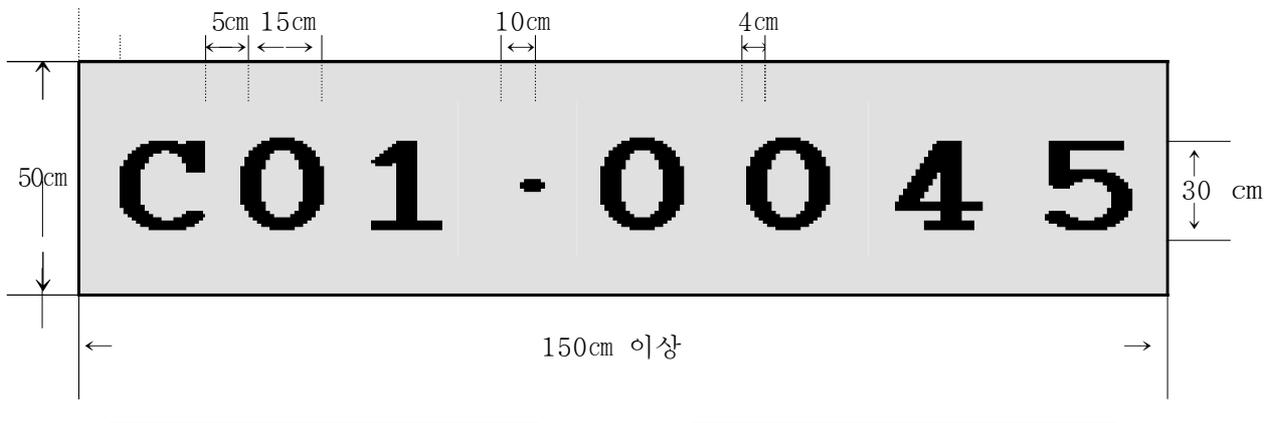
(2) 어획할당량이 증가한 어선

허가증번호	어선의 명칭	변경전 어종별 어획할당량(톤)	남은 어종별 어획할당량(톤)	변경후 어종별 어획할당량(톤)	증가된 어종별 어획할당량(톤)
	(로마자)				
합계					

작성요령

1. 단위는 톤으로 하되, 소숫점 3자리까지 기재한다.
2. '어업활동의 종류', '허가증 번호', '어선의 명칭' 란은 어업활동 허가신청서 작성요령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3. 각 어선은 허가증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어선의 표지판(예)



작성요령

1. 표지판의 바탕색은 파란색(藍色), 글자색은 흰색으로 선명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2. 글자부분에 사용하는 도료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형광도료(螢光塗料)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표지판의 재질은 Aluminum판(板), 동판(銅板), 합성수지재(合成樹脂材) 등 부식(腐蝕)이 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

漁獲物運輸船定點檢查制度實施方案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실시 요령)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3차 연차회의에서 합의한 어획물운반선(이하 '운반선'이라 한다)체크포인트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 본 실시요령을 제정한다.

1. 정의

운반선은 상대국 EEZ내 입·출역시 반드시 지정된 해역을 경유하여 통과하며, 상대국 지도단속선의 승선조사에 협조한다.

지정된 해역은 한·중 양국이 합의한 체크포인트에서 3마일 이내의 수역을 말한다.

2. 실시기관

1) 한국측 실시기관

(1) 통보기관은 대한민국 수협중앙회(전화 : 82-2-2240-2323, 팩스 : 82-2-2240-3032, 82-2-2240-3027, 이메일: nffc_rs@suhyup.co.kr) 및 서해어업관리단 공동대응센터(전화 : 82-61-240-7941, 팩스 : 82-61-240-7948, 이메일 : westship2@korea.kr)로 한다.

(2) 단속기관은 서해어업관리단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 중국측 실시기관

(1) 통보기관은 중국 어업협회로 한다.(전화: 86-10-5919-4145, 팩스 : 86-10-5919-4125, 이메일: chinacraa@126.com)

(2) 단속기관은 중국 해경국으로 한다.

3. 실시방법

운반선이 상대국 EEZ내 입·출역시 반드시 제4항의 체크포인트 중 하나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택한 체크포인트를 사전 통보 및 호출하고, 상대국 지도단속선의 승선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운반선 체크포인트

1) 한국측 체크포인트

K1 : 36°55'00 " N, 124°25'00 " E

K2 : 36°30'00 " N, 124°30'00 " E

K3 : 36°00'00 " N, 124°30'00 " E

K4 : 35°30'00 " N, 124°30'00 " E

K5 : 34°30'00 " N, 124°06'00 " E

K6 : 34°00'00 " N, 124°02'00 " E

K7 : 33°30'00 " N, 124°08'00 " E

K8 : 33°00'00 " N, 124°34'00 " E

K9 : 32°30'00 " N, 125°05'00 " E

K10 : 32°11'00 " N, 126°00'00 " E

2) 중국측 체크포인트

Z1 : 36°15'00 " N, 123°00'00 " E

Z2 : 35°30'00 " N, 122°00'00 " E

Z3 : 34°00'00 " N, 122°00'00 " E

Z4 : 33°00'00 " N, 123°00'00 " E

Z5 : 32°20'00 " N, 123°45'00 " E

Z6 : 29°40'00 " N, 123°30'00 " E

Z7 : 29°40'00 " N, 124°00'00 " E

Z8 : 29°40'00 " N, 124°30'00 " E

Z9 : 29°40'00 " N, 125°00'00 " E

Z10 : 29°40'00 " N, 125°30'00 " E

5. 입·출역 통보 절차

1) 운반선이 상대국 EEZ내 입역하기 전 입어절차 규칙상의 "입 · 출역 정보의 제출서식"에 따라, '입역예정시간'란에 체크포인트 통과예정시간을, '입역 예정위치'란에 통과예정인 체크포인트 일련번호 또는 경 · 위도 등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운반선이 상대국 EEZ를 출역할 때에는 상기방식을 따르지 않고 아래 제2항을 따른다.

2) 운반선이 상대국 EEZ 수역을 입·출역 할 때 체크포인트로부터 1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또는 통과 1시간 전) VHF ch16(156.8Mhz)를 이용해 상대국 지도단속선을 호출하여 통과 예정시간과 위치를 보고하고 이상의 사항을 조업일지에 기입한다. 다만, 상대국 지도단속선 호출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 운반선 선장은 통과예정 시간 및 위치를 중국어업협회를 통해 서해어업관리단(공동대응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체크포인트 통과 10분전인 경우 다시 VHF ch16(156.8Mhz)를 사용해 상대국 지도단속선을 지속적으로 호출하여 통과예정인 시간과 위치를 보고하고, 동 사항을 조업일지에 기입한다.

4) 운반선은 자발적으로 상대국 지도단속선의 승선조사에 협조한다. 승선조사가 끝난 후 상대국 단속공무원은 승선조사 상황을 운반선 조업일지에 기입하고 날인 확인한다.

5) 운반선이 통과예정인 체크포인트에서 상대국 지도단속선을 호출하여 응답이 없을 경우, 운반선 선장은 중국어업협회에 동 내용을 보고하고, 중국어업협회는 동 내용을 서해어업관리단(공동대응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5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서해어업관리단(공동대응센터)은 '승선조사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반선이 체크포인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국어업협회에 허가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운반선 선장은 동 내용을 조업일지에 기재한 후, 입역한다.

7) 2호내지 3호 및 제5호에 따른 상대국 지도단속선 호출은 한국어로 "한국 지도단속선" 또는 중국어로 "韓國指導團東船"로 한다.

6. 제5항 제2호 내지 제7호까지의 개정내용은 1년간 시범실시하고 정식 실시 여부는 제19차 한중 어공위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